

의안번호	2214448
의 퇴 인	김남희의원
회 답 일	2025. 12. 15.
추 계 번호	25C63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6조의3(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46조의4(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에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성평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운영 지원 3.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운영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6조의3(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6조의4(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2. 상세 사유

□ 성평등센터 지정 및 지원(안 제46조의3 및 안 제46조의4)

- 개정안에 따라 중앙성평등센터와 지역성평등센터를 각각 지정하고, 성평등 교육 또는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지정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현행 재정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성평등센터 지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5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법 제46조¹⁾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
- 1)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교육 연구 사업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에서의 성평등센터가 수행하기로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개정안(중앙성평등센터)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요 사업 비교

안 제46조의3 각 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요 사업
1.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공무원 성인지교육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 등 양평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활용을 위한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2.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대중매체 미디어 인식개선,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등 양성평등 의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3.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 교육사업을 수행 ※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일부 지자체의 기관에서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 운영
4.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 17개 시·도 지역 기관(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과의 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자료: 성평등가족부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